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의장 임기 만료 후 정당 복귀 제한〉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41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 · 성일종 · 김미애 · 김소희 · 조배숙 · 서천호
박덕흠 · 이철규 · 강승규 · 윤재옥 · 최형두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5. 4. 2.

3. 회 부 일 : 2025. 4. 3.

※ 의안번호 : 954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하여,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으로는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002년 의장의 당적 이탈 의무가 명문화되어 중립적인 의장모델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에 대해 의장을 대상으로 한 사퇴권고결의안이 제출되거나 권한쟁

의심판이 청구되는 등 국회의장의 중립적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강조한 바 있음.

또한, 국회의장이 예산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사례가 이어져 의장의 당파적 의사결정이 정당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됨.

이에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원 임기만료일까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 -----의원 임기만료일까지----- -----. ----- ----- -----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삭 제>

현행법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¹⁾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1)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받으려는 경우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또한,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회법²⁾에 따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³⁾.

개정안은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이 의장으로서의 공정한 의사 운영과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저해된다고 보아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임기 내 당적 보유 금지를 통한 의사운영의 중립성 확보 취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당활동

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2)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3)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p.86.

보장 및 유권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확보 필요성 등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참고로, 주요국 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제한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표-2] 주요국 의회의 의장 당적 보유 관련 현황

구 분	의장 당선 시 당적 이탈	의장 임기 종료 후 정당 복귀 제한
미국 하원	×	×
영국 하원	○*	×
일본 의회	○*	×
프랑스 의회	×	×
독일 의회	×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관련”, (2025.5.8.)⁴⁾ 및 “이슈와 논점: 국회의장의 역할 갈등”(2024.7.26.)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정리한 것임.

각주: 영국하원 및 일본의회의 의장 당선 시 당적 이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합의에 바탕을 둔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14

4) 주요국 의회의 의장 당적 이탈 여부에 관한 입법조사회답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 미국 하원의장은 당적 이탈의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당의 지도자로서 의장의 의사정리권을 활용하여 다수당의 정책의제를 입법에 성공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
 - 하원 본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권한이 의장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은 「하원의사규칙」 제1장제5조에 규정되어 있음
- ☐ 영국 하원의장은 의장선출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해야 함. 하원의장은 초당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원내정당들에게 공평하게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본회의 진행에서 원내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임
 - 의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역구 대표로서의 역할은 다른 의원과 마찬가지로 수행함
- ☐ 일본 국회의 경우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 모두 의장직에 선출됨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음
- ☐ 프랑스와 독일 의회의 의장은 의장에 당선되어도 당적 이탈을 하지 않음